

2020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력경쟁채용시험(일반임기제)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1개 직위, 총 1명)

직급	직위코드	선발인원	담당직무	근무예정기관(본부)	비고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6급)	H	1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radio"/> 수출국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조사·분석<input type="radio"/> 수출국 식품 등 제조업체 위생관리현황 조사·분석<input type="radio"/>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 규정·현황 비교·분석<input type="radio"/> 국내·외 시험·검사(이·화학) 품질 분석 등	수입식품 안전정책국 현지실사과	최초임기 : 채용일~'20.12.31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응시자격요건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 ※ 임기제공무원은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

나. 응시 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 자세한 담당예정업무 및 관련분야는 [붙임] 직무기술서 참조)

직급	응시자격요건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6급)	<p>[관련분야]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p> <p>[관련학과] 식품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 학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年)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축산·수산제조·품질관리·포장·식품), 기사(6, 축산·수산제조·품질경영·포장·식품), 산업기사(9, 축산·품질경영·포장·식품), 위생사(8), 영양사(8) ○ [경력]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위]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응시 관련 유의사항

< 공통 >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
 예) '자격증', '경력-①', '경력-②', '경력-③', '학위-①', '학위-②', '학위-③' 중 하나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0.11.30.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 2가지를 모두 갖춘 응시자의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며, 특정 응시요건을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검토결과 해당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다른 응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부적격 처리됨

< 응시자격 요건 >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 분실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 (단, 합격확인서는 불인정)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증, 한식조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등)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제출하지 말아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 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 '학위' 또는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
 -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제출
 -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홈텍스) 제출
 - ④ 폐업사실증명서(국세청홈텍스) 제출
 - ※ 서류 확인과정에서 폐업되지 않은 기관(기업·단체)의 경력에 대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 서류 미제출 또는 세부경력사항 미기재 등의 사유로 해당 경력이 응시관련분야와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응시자의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 요건 >

- 우대요건,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소지 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20.10.26.)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 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으로,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별도 첨부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함

【 기타 】

- 서류전형에서 어학성적으로 인정 가능한 시험은 'TOEFL(iBT, 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로서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응시자가 획득한 성적에 따라 차등 평정됨
-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2019.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
- ※ '~SPEAKING, ~WRITING' 등 부수적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는 인정되지 않음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근무 기간 및 보수 수준

가. 근무기간

-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간(근무시작일~‘20.12.31.)으로 정함
 -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안전부 협의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보수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구 분	상한액	하한액
식품위생6급(일반임기제)	71,830천원	36,190천원

- * 상기 연봉액 이외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외 급여 지급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의 충실성, 관련분야 직무 및 논문·연구실적, 우대 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등

-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 인성검사 실시(온라인)
 - 목적 : 공직가치관 및 위기대응능력 사전 검증
 - 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어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됨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방식) 면접위원과 서류전형 합격자간 질의·응답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 불합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2조 제3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계속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 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 방법 등

가. 원서접수 : 2020. 10. 21.(수) 10:00 ~ 10. 26.(월) 16:00 (공고 : '20. 10. 16. ~ 10. 26.)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s://employ.mfds.go.kr>)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수수료(7,000원) 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관련 부가 비용 등) 발생
- 제공된 서식 이외의 증빙자료는 스캔 후 파일로 첨부(업로드)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동일인이 복수 또는 중복 지원할 경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
- 접수기간 중에는 응시수수료 결제 전 단계까지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는 있으나, 응시수수료 결제 이후 및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취소 시 응시수수료는 환불 처리함
- 자료 작성 후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한 시점이 원서가 접수된 시점이므로 원서 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까지 완료하지 않으면 접수 처리되지 않음
→ 주말에는 전화 문의가 불가능하고, 접수 마감일에는 응시자가 몰릴 경우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10. 23.(금)까지 결제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11. 20.(금)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다. 온라인 인성검사(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후 ~ 11. 23.(월)

라. 면접시험(예정) : 2020. 11. 27.(금), 11. 28.(토), 11. 29.(일), 11. 30.(월) 중

* 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해외귀국자의 경우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참고(면접일정 변경 불가))

마.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예정) : 2020. 12. 14.(월)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인사혁신처)에 공지 예정

※ 임용 시기는 2020년 12월말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제출서류 등(모든 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원서접수를 완료하면 자동 생성 ○ 응시수수료 전자결제 외 소정의 처리비용 발생 - 6급 : 7,000원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반드시 기재
2.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목록(시스템 활용 제출서류는 제외)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1매 이내로 작성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4 2매 이내 작성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6.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직무와 관련된 자격(면허)증 제출, 담당 직무와 무관한 자료 제출 금지(예: 운전면허증, 한식조리기능사) * 분실시 면허자격증명서는 제출 가능(단, 합격확인서는 불가)
7. 학위증명서(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석·박사학위 증명서) 사본 각 1부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학위요건 지원자 외에도 <u>시험 심사위원 제척사유 확인용</u>으로 응시자 전원 제출, 심사위원에게 학교명 등은 제공하지 않음) * (학위 응시자)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학위수여(졸업) 예정증명서 제출도 가능하나, 최종시험(면접)일 현재 해당 학위를 소지하여야 함 ○ 모든 학위증명서에는 반드시 전공 기재 필요 ○ (국외학위 취득자) 학위증 및 졸업증명서 사본(2개 모두)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구 분	내 용
8.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기재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u>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① 경력증명서 외 다른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② 4대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③ 소득금액증명원, ④ 폐업사실증명서 ①~④ 모두 제출 ○ 발급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 별도기재)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 인정되므로 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 표시되어야 함(예 : 주2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경력(재직)증명서에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아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진위여부검증 단계에서 시간제 근무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u>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9. 외국어(영어)능력 성적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시험: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의 성적에 한함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17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성적이어야 유효함
11.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성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제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
1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주민센터 등) 또는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기간 또는 보호기간 반드시 명시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 응시자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자료 진위 검증 및 제3자 정보제공 등의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 ※ **국외에서 발급된 증빙자료(학위, 논문,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 국외 학위 및 근무(연구)경력의 경우 담당교수 등 학위취득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화 번호, FAX, 이메일주소 등을 반드시 명시**
- ※ **국외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등 사본을 제출(한글번역본 첨부)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을 면접일에 지참**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격요건의 판단 및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규정에 의한 시험, 그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하며,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에 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제출한 서류 중 원본에 대한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원본) 반환 청구기간(예정) : '20. 12. 15. ~ '21. 1. 14.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제철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에 따른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제도 : 운영지원과 인사관리팀 (☎ 043-719-1243, 1249)
- ※ 원서접수, 결제시스템 등 : 우수인재채용시스템 운영팀 (☎ 043-234-3100)

[별지 제1호]

제출서류 총괄표

직위코드	응시직급	응시요건 (경력, 학위, 자격증 중 선택)	성명	생년월일
H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예시) 경력-①		0000.00.00

■ 작성목록(총괄표)

목록	제출여부
1. 이력서(필수)	
2. 자기소개서(필수)	
3. 직무수행계획서(필수)	
4.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해당자)	
5. 전공이 기재된 학사(전문학사 포함) 이후의 모든 학위증명서(필수)	
6.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7. 외국어(영어)성적 증명서(해당자)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해당자)	
9.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본, 남성만 제출)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	
11. 진위검증 및 부정행위 관련 동의서(필수)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여부란에 “O” 표시
- * 응시원서는 원서접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하므로 목록 기재 불요

[별지 제2호]

이력서

가. 인적사항						
응시 번호	※담당자 기재	응시직급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예시) 경력-①	성명

나.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요건 1개만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자격증 번호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주)○○식품	2017.00.00~현재(00개월 00일)	과장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요약 기재
	(주)○○연구소	2014.00.00~2017.00.00(00개월 00일)	연구원	
학위	전공	학위취득(예정)일		학위 종류

다. 우대요건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	자격증번호	자격검정기관
경력	식품기사	0000.00.00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요약)
		2014.00.00~2017.00.00(00개월 00일)	과장	
		2009.00.00~2014.00.00(00개월 00일)	연구원	
학위	전공	학위취득일		학위 종류
	식품공학	0000.00.00		석사
	생명과학	0000.00.00		박사
영어 성적	응시일자	시험명	점수	영문성명
	0000.00.00	TOEIC	800	0000.00.00

다. 가산요건(한국사능력검정시험성적)				
한국사	시험일자	회차	등급	인증번호
	0000.00.00	00	3	00-000000

* 기재사항이 많더라도 반드시 1장으로 작성(줄 추가·삭제, 글자크기 조절 등 가능)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직위코드	H	응시직급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예시) 경력-①	성명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1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직위코드	H	응시직급	식품위생주사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예시) 경력-①	성명

<작성요령 - 이하 부분은 확인 후 삭제하고 작성할 것>

- 특별한 양식 없이 자신의 경험, 기관 및 임용예정직급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비전 및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일정,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술
- 출신학교명, 출생지, 부모 등 친인척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서류심사 과정에서 불이익(불합격처리, 감점 등)을 받을 수 있음
- 글자크기 10pt 이상,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참고

직무기술서(식품위생주사[일반임기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임용예정직급	임용예정분야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식품위생주사	국내·외 식품등 위생관리체계 조사 등
주요 업무	<input type="radio"/> 수출국 식품 등 관리체계 조사·분석 <input type="radio"/> 수출국 식품 제조업체 위생관리 현황 조사·분석 등		
필요 역량	<input type="radio"/>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input type="radio"/> (직급별 역량) 긍정적 팔로워십, 문제해결력·관계구축력, 의사소통능력 <input type="radio"/> (직렬별 역량) 전문지식, 분석력, 정보관리능력 등		
필요 지식	<input type="radio"/> 식품 등 안전 관련규정 및 기준·규격에 대한 지식 <input type="radio"/> 식품 등 제조·위생 관련 분야 전문지식		

※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															
관련분야 : 식품등 안전관리															
응시자격요건	<p><input type="radio"/> 아래의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자로서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숫자에 해당하는 기간(年)이상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기술사</td><td>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td></tr> <tr> <td>기사(6)</td><td>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td></tr> <tr> <td>산업기사(9)</td><td>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td></tr> <tr> <td>기타(8)</td><td>위생사, 영양사</td></tr> </table> <p>* 관련분야 :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p>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6)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9)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타(8)	위생사, 영양사						
기술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6)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9)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타(8)	위생사, 영양사														
경력	<p><input type="radio"/>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관련분야 : 식품 관련 공공기관·기업체 품질관리 및 시험·검사, 국내·외 식품 등 위생관리체계 등 조사·분석</p>														
학위	<p><input type="radio"/>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아래 ①, ②,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①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p> <p>* 관련학과 : 식품공학, 식품저장학, 식품영양학, 식품화학 등 식품 계통 학문</p>														
우대요건	<p><input type="radio"/>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연차별 차등 배점)</p> <p>* 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담당업무 미 기재)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p> <p><input type="radio"/> 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학위·자격증(학위별·등급별 차등 배점)</p> <p><input type="radio"/> 외국어(영어)성적이 아래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차등 배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구분</td><td>TOEFL(iBT)</td><td>TOEFL(PBT)</td><td>TOEIC</td><td>New TEPS</td><td>FLEX</td><td>G-TELP(Level2)</td></tr> <tr> <td>기준 점수</td><td>86점이상</td><td>567점이상</td><td>790점이상</td><td>385점이상</td><td>700점이상</td><td>77점이상</td></tr> </table> <p>*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시험점수를 인정하므로, 인정되는 어학성적을 시험별로 소지한 경우에는 각각의 성적을 모두 제출 * 2019.1.1.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함</p>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구분	TOEFL(iBT)	TOEFL(PBT)	TOEIC	New TEPS	FLEX	G-TELP(Level2)									
기준 점수	86점이상	567점이상	790점이상	385점이상	700점이상	77점이상									
가산요건	<p><input type="radio"/>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일정 등급을 취득한 자('17.1.1. 이후 실시된 성적) (2등급 이상 : 서류전형 만점의 5% / 3등급 : 서류전형 만점의 3%)</p>														